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1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을 “업무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